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자문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중 "공무원인"을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촉된"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
자문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함께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를 추진함으로써 시를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1. 나무심기(심기기술·방법 및 수목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나무가꾸기(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유도(홍보, 우수사례 발굴·보급, 기념식수,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녹지의 조성·관리·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공원녹지관련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 환경 또는 조경 관련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3. 환경 또는 조경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언론계, 법조계, 각급 학교, 종교단체 등의 관련인사
5. 환경관리실장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의 순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실 조경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그 취지 및 내용 등을 위원에게 설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술지원분과 : 수목식재, 녹화기술지원 등 심의
2. 시민운동분과 : 환경 및 시민단체의 녹화운동, 보급방법 활성화 방안 등 심의
3. 홍보분과 : 홍보매체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심의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 및 조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10조에 의한 의견청취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2년 6월말까지 적용한다.

③(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방침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④(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방침에 의한 위원회에서 호선된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에 소집된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할 때까지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 業務報告

### 어린이 대공원 운영

□일반현황

○조 직 ..... 1소장 2부 5과

-소 장 : 운영부(서무과, 운영과)
관리부(식물과, 동물과, 시설과)

○인 원

| 구 분 | 계 | 일반직 | 업무직 |
|---|---|---|---|
| 정 원 | 99 | 22 | 77 |
| 현 원 | 95 | 22 | 73 |
| 과부족 | △4 | - | △4 |

○주요시설

-면 적 : 583,938㎡(수림 60%, 잔디 11%, 시설부지 29%)

-시 설 : 놀이동산 22종, 수영장 2, 테니스장 3, 분수대 2, 식물원 1, 매점 28, 식당 4, 화장실 16, 주차장 789대 등

-동식물 : 동물 99종 681마리(포유류41종,